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

제1조(기존 매매계약)

매도인 000와 매수인 000는 2022년 5월 1일 서울 000구 000동 000번지 000아파트 00동 00호에 관한 매매계약(이하 “기존 매매계약”이라 함)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000원 및 같은 해0월 0일 중도금 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, 같은 해 0월 0일 잔금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

제2조(합의해제)

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합의하여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.

제3조(합의해제 효력 발생일)

본 합의해제의 효력은 2022년 11월 1일부터 발생한다.

제4조(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)

매도인은 2022년 11월 1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000원과 중도금 000원을 반환하고, 본 합의해제 제6조에서 정한 비용 등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

제5조(손해배상 여부)

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합의해제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제6조를 제외하고는 법정해제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.

제6조(비용 등 부담)

매도인은 아래의 중개수수료, 이자,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, 2022년 11월 1일 총 000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.

(1) 기존 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부담하였던 중개수수료 000원

(2)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을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 000원

(3) 매수인이 본 합의해제로 입게 된 손해액 000원

0000년 0월 0일

매도인 : (인)

주 소 :

매수인 : (인)

주 소 :